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02
----------	-----

2012년 10월 1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 7. 5. 정세환 의원 외 24명
- 나. 회부일자 : 2012. 7. 10.
-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2. 10. 12 상정)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정세환 의원)

제안이유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이제까지 서울시가 진행시켜온 외국도시들과의 교류협력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이에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의회차원에서 발전적인 도시외교의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집행부의 외국도시들과의 교류협력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발전적인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노 수)

□ 검토요지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 본 결의안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서울시의 자체적인 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며, 해외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정책에 대하여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는 희망서울시정 구현을 위한 우수선진사례 발굴 및 상호우호교류 등을 위하여 워싱턴DC, 동경 등 전세계 39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음. 특히 자매우호도시 확대는 도시외교를 통한 서울시 영향력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자매·우호도시와의 시찰파견 및 초청사업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동 안건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관례적이거나 유명무실하게 추진되었던 외국도시들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도시외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안건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종합계획의 수립, 외국도시와의 협정체결 및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서울시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도시교류 업무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제3호¹⁾에 따라 경제진흥실 국제협력과에서

1) 제6조(경제진흥실) 경제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진흥 및 지역산업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벤처산업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협력, 국제회의, 도시브랜드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투자유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 상공업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지원, 농수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바, 해당 부서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범위와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 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2항2)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재정경제위원회는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중첩되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동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구성결의안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서울시의 자매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경제진흥실과 세계도시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연구소를 재정경제위원회가 소관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9.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8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902
----------	-----

발의년월일 : 2012년 7월 5일

발의자 : 정세환 의원 외 24명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발전적인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이제까지 서울시가 진행시켜온 외국도시들과의 교류협력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진다.
- 나. 이에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의회차원에서 발전적인 도시외교의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집행부의 외국도시들과의 교류협력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8조

※ 따로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외국도시들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지구촌이라 명명되듯이 현대사회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상태로 연결되어 지고 있고 그로 인해 국가간의 교류협력 못지않게 도시들 간의 자주적인 교류협력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서울시의 자체적인 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정확하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해외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서울시가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발전적인 도시간 교류협력을 위한 서울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12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2012년 9월 일

발의자: 정세환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수	시기	활 동 내 용	활 동 목 표
1차	2012년 9월 (초순)	○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활동방향 제시 및 역할 분담
2차	9월 (중순)	○ 현재까지의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 실태 파악 (서울시, 서울시의회)	문제점과 미비점 파악
3차	10월	○ 발전적인 도시외교 방안 연구 (1)	특위위원들과 집행부간 의 토론 및 연구
4차	11월	○ 발전적인 도시외교 방안 연구 (2)	특위위원들과 집행부간 의 토론 및 연구
5차	12월	○ 발전적인 도시외교 방안 제시	
6차	2013년 1월	○ 제시 방안의 효과성 검증 작업	특위위원 + 집행부
7차	2월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활동결과 보고